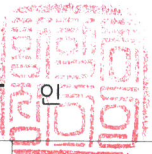
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9월 21일

황학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조 *환	조 *환 1972-05-06	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4가길 (황학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9-21